

의안번호	제 19 호
의결년월일	1998. . .

의결사항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년월일	1998. 1. 20 .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
----------	----

제출일자 : 1998. 7. 20.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5,680호 '98. 2. 24공포)을 제정하고 여비단가 등을 조정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함(안 제3조)

나.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안 제4조)

1)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 일비 및 숙박비는 체제일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

2) 2인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여행하는 경우 운임(국외여비는 제외)·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제3항)

3) 국내여비중 4급이하에 대한 숙박비를 평균 13퍼센트 인상함(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3. 법적근거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5,680호)

4. 개정조례(안) : 별첨

사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중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